

## 10. 학사학위취득 유예

가.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칙 제40조에 규정된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일정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.

나. 신청자격 : 학칙이 정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 교과목 재수강 또는 자기개발이 목적인 학생(국제학생은 제외)

다. 유예기간 및 횟수 : 학기 단위로 최대 2회(총 1년)학기까지 허용

라. 신청방법 : 졸업자격을 취득하는 학기 중 일정 기간 내에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신청서류를 제출

마. 등록금 납부

- 1) 교과목의 재수강을 위해 수강신청한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료 징수기준에 따라 등록금 납부
- 2) 자기개발이 목적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감면

바. 유의사항

- 1) 학사학위취득 유예학생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
- 2) 유예를 허가받은 자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강일 전까지 유예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
- 3)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음
- 4) 유예 신청자격과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병역기피 등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

사. 기타 졸업연장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‘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지침’에 의한다.